



보도	2024.8.7.(수) 석간	배포	2024.8.6.(화)		
담당부서	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	책임자	팀장	김동하	(02-3145-5212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김수민	(02-3145-5216)
			조사역	윤호연	(02-3145-5217)

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

- 누수 사고 보상 관련 (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중심으로) -

주요 내용

- ◈ 아파트, 빌라, 상가 등의 건물 **노후화**, 배과 파손·결합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(이하 '누수사고'라 함) 발생이 빈번
- **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** 등 관련 보험상품의 **약관**에서 정하는 **보험** 사고,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, 보험금이 결정됨
- ☞ 주요 **분쟁사례**를 통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

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

- 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.
- ②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,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.
- ❸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^⑤누수 원인 주택(윗집)에 **직접 거주**하거나 ^{②*}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,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. *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("20.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
- ♠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6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,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^{*}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 - * 다만,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.

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.

[민원 사례]

- □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○○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,
- **➡** 보험회사는 '**자기 집**'에 **발생한 피해**는 '배상책임'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

[약관 내용]

- □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^①주거하는 주택의 소유, 사용 또는 관리 및 ^②**일상생활**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**타인**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**법률상**의 **배상책임**을 **부담**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,
 - **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**에 관하여는 '타인에게 배상할 책임'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
- □ 한편, **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**(재물보험에 해당)은 소유·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,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므로, 자기 집 수리비 보상이 가능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.
- 2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구 분	자기 집 보상	남의 집 (아래층 등) 보상
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[*] [배상책임보험]	× (단, 손해방지비용: O)	0
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[재물보험]	0	×

* 상가의 경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,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 가능

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 되고,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.

[민원 사례①]

- □ 아파트 주민 이○○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서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하였으며, 자기 집에도 방수·타일공사 등을 실시
 - 이후 보험회사에 **아랫집 수리비** 외에 **누수 탐지비**, 자기 집 수리 관련 **철거비**, **방수 공사비**, **타일 공사비**, **폐기물 처리비를 청구**하였는데,
- ➡ 보험회사는 ^①아래충 세대가 입은 손해와 ^②누수 탐지비, 철거비,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, ^③타일 공사비,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·경감과 무관하여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

[약관 내용 및 판례]

- □ (약관)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,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(예: 아랫집 수리비 등)를 보상하는 외에,
 - **손해의 방지·경감**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('손해방지비용')을 보상 ☞ 자기 집 수리비도 보상될 여지 있음
- □ (판례) 손해방지의무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, 설령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·경감되더라도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제외되며(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07631),
 - 구체적인 사안에서 **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**는 누수나 그로 인한 **피해상황**, **피해의 확대가능성**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**작업**의 **목적**과 **내용**을 감안하여 **개별적**으로 **판단**(대법원 2021다201085)

[민원 사례②]

- □ 아파트 거주자 장○○는 자기 집 화장실에서 물이 아래층으로 새어 들어가는 누수 경로를 찾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하였으나, 원인을 찾지 못한 채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는데,
- ➡ 보험회사는 당초 **탐지 결과**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

이후 동 사안이 **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**되고 **분쟁조정위원회 논의**를 **거처** 누수사고의 경우 소위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**보험금**을 **지급**

[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(분조례)]

□ 누수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 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(분조례 제2020-8호)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□ 누수 관련 공사비 중 손해 방지와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(누수 탐지비용, 물받이 설치비 등)은 보상되나, 자기 집 수리비(타일 공사비, 폐기물 처리비 등)는 시안별로 보상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구 분	손해방지비용 해당 (보상O)	손해방지비용 非해당(보상×)
시간적 범위	이미 발생한 손해와 관련	향후 발생할 손해의 예방 관련
장소적 범위	누수 발생 및 원인 지점	누수 지점이 아닌 부분 및 장소
공사 항목 (예시)	손해의 방지·경감을 위한 비용 (누수 탐지비, 배관 철거·교체비 등)	손해의 방지·경감과 무관한 공사 (타일 공사비, 폐기물 처리비 등)

※ 사안별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

[2] 누수원인 탐지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가능합니다.

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^①누수 원인 주택(윗집)에 직접 거주하거나 ^②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 에도 가능하며,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.

*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(20.4월) 이후 가입 건에 한함

[민원 사례]

- 아파트 701호를 소유한 지○○는 '19.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직후 임대하여 실제 거주는 임차인이 하던 중,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충 세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,
- ➡ 보험회사는 개정 前 약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, 피보험자가 **주택 소유자** 이지만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

[약관 내용]

- □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'20.4월 약관 개정으로 ^①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^②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**주택에서**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
 - 즉,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관하여
 임대인(소유자=피보험자)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
 - ※ 주택이 다신경, 보험증권 기짜여부, 주택의 용도 및 사고학점 등에 따다 보상여부가 상이

개정 前 약관(~′20.3월)	개정 後 약관("20.4월~)
" <u>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</u> <u>중권에 기재된 주택</u> 의 소유,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"	"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 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 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의 소유,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사고"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① 약관 개정('20.4월) 이전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보상되고,

'20.4월 이후 가입한 특약은 [□]**피보험자**가 **직접 거주**하거나 ^②피보험자가 **소유**하면서 **임대**한 **주택**의 **누수사고**도 **보상**됩니다.

- TIP! 누수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'보험증권에 기재'된 하나의 주택이므로, 소유자(피보험자)가 **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 기재**가 필요합니다.
- ②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, 계속하여 누수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중권상 기재를 변경하여야 합니다.

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나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[민원 사례]

- □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○○는 윗집 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믿고,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하여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하였으나,
- ▶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*, 물가자료, 시중노임
 단가를 토대로 동일 작업량 및 시간 기준으로 통상의 사례(예: 보통인부 2명 소요)
 보다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의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
 - *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(예시 / 산출기관) 건설공사 관련 → 대한건설협회, 전기공사 관련 → 대한전기협회

[관련 판례]

- □ 법원은 **하자보수비**의 **적정성**이 문제된 사안에서, 비용의 **객관성**과 **대표성**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**객관적인 가격**임을 **입중하여야** 한다고 판시(대법원 95다24975)
 - 누수사고 사안에서 ^①누수와 직접 관련된 공사 부분이 아닌 점 및 ^②객관성이 담보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일부분으로 한정(인천지법 2018나1117)한 사례가 있음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□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 · 공사비 중 [□]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
 □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(액)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- ② 누수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
-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, 복도,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
* 다만,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.

[민원 사례]

- □ 상가 401호에서 장사하는 최○○는 402호 앞 복도의 계량기 및 배관 동파에 따른 누수로 가전제품 등 집기에 물이 스며든 피해를 입어 402호 점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(직접) 청구하였으나,
- ➡ 보험회사는 복도 계량기, 매립된 배관은 '**공용부분**'에 해당하고 개별 세대에 관리책임이 없어(배상책임 不성립)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

[관련 판례]

- □ **공용부분**에 **원인***이 있어 발생한 **누수 사고**의 경우 전용부분과는 달리 **관리의무**가 **없는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**
 - * (예) 아파트:건물 옥상 방수층 파손 건물 주치창 에폭시 바닥 파열 외벽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
 - **아파트 관리사무소** 또는 **입주자대표회의**가 공용부분 관리주체로서 **배상책임을 부담**(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6899, 수원지법 2019나71608)

- < 소비자 유의사항 > -

□ 누수 사고의 원인장소가 '공용부분' 또는 '전용부분' 인지에 따라 배상책임(보상)의 주체가 달라집니다.

구 분	공용부분	전용부분	
의 미	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(아파트 옥상, 복도, 주차장 등)	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	
관리책임 주체	입주자대표회의 등	개별 세대	
관련 보험	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	개별 세대 가입 보험	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